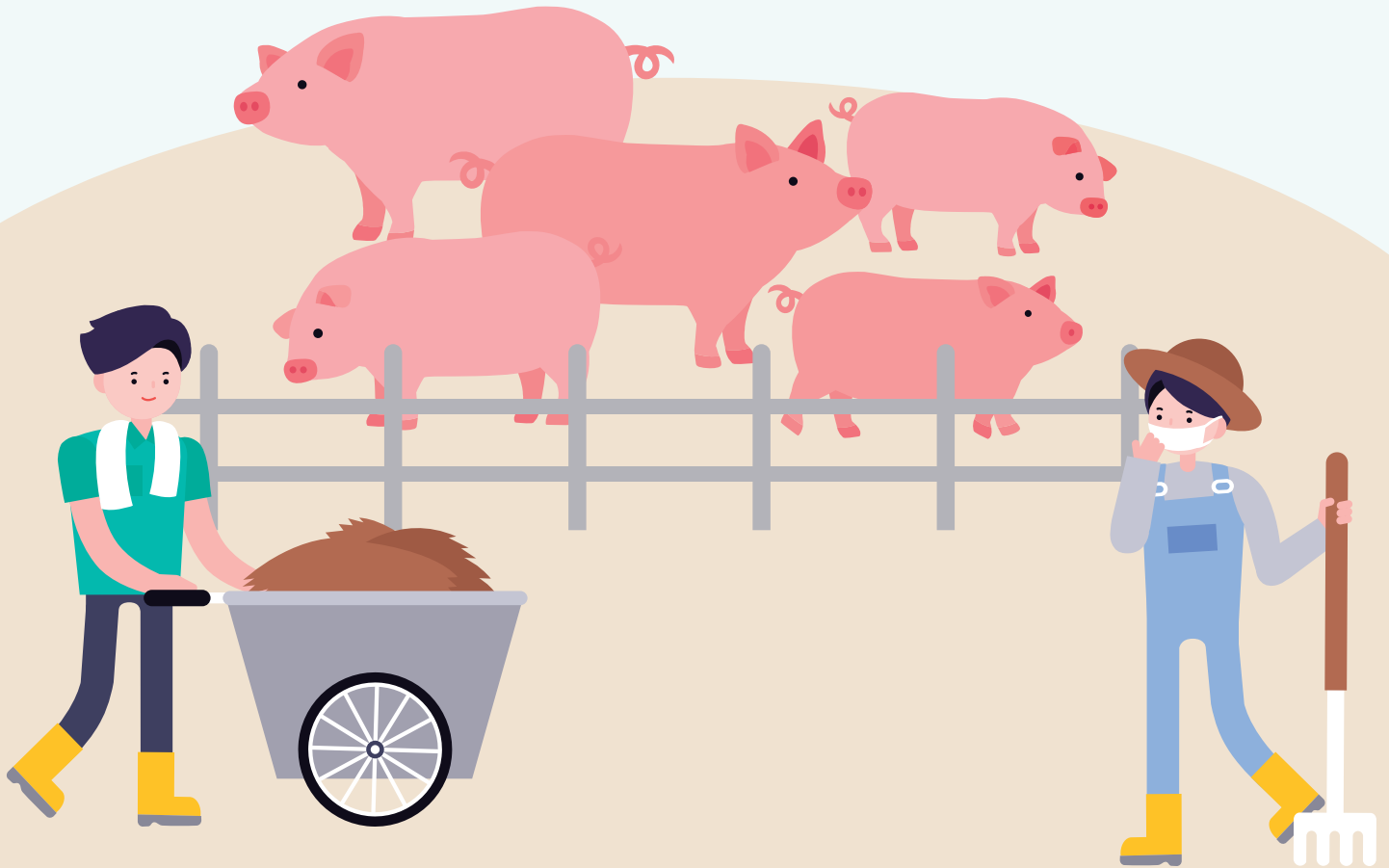


# 살처분·수매 농장 재입식 절차 안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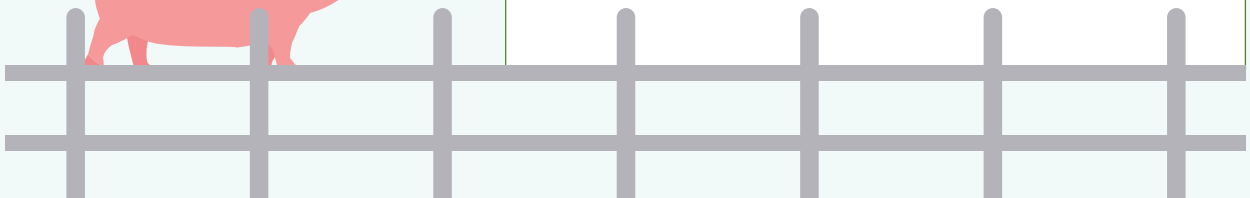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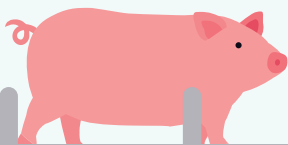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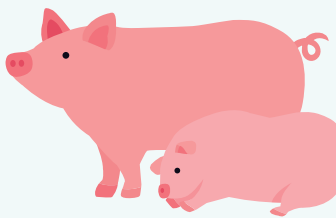


양돈농장, 지자체, 단체 등에서는 ASF 발생 차단을 위해 접경지역 살처분·매몰 농장에서 돼지를 재입식할 경우 동 안내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 Contents

- 03 **1.** 재입식 절차 개요
- 04 **2.** 절차 세부 내용
  - 04 1. 재입식 사전 방역조치
    - 가축 분뇨 처리
    - 농장 세척·소독
  - 07 2. 재입식 절차
    - 강화된 방역시설
    - 농장 점검·평가 신청
  - 11 3. 재입식
    - 재입식 및 사후관리
    - 재입식시험
- 12 <붙임1> 양돈농장 진입 필수 차량 등록신청 서식
- 13 <붙임2> 양돈농장 재입식 점검·평가 신청서
- 14 <붙임3> 양돈농장 재입식 점검·평가서
- 17 <붙임4> 양돈농장 방역의식·이행 평가서
- 19 <붙임5> 발생농장 등 재입식 시험 요령
- 21 <붙임6> 양돈농장 방역수칙
- 24 <붙임7> ASF 유효소독제 현황
- 28 <붙임8> 농장 분뇨 환경시료 검사요령



# 재입식 절차 개요

## 1. (재입식 사전 방역조치) 입식 준비 과정에서부터 외부차량·출입자에 대한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 농장에 남아 있는 분뇨는 SOP에 따라 농장 밖으로 반출·처리하고, 농장 시설 내외부, 진입로 등을 청소·세척·소독\*합니다.

\* ①예비소독 → ②축사 내 분뇨제거 → ③환경정리 → ④청소·세척·소독

- 농장 방역의식 이행평가\* 등 점검에 대비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①출입자·차량 소독·기록, ②외부물품 반입시설에 소독·보관, ③폐사체 퇴비장에 방치 금지, ④퇴·액비장 세척·소독, ⑤양돈업과 경작 겸업금지(농경지는 위탁관리, 농기계 반입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 2. (재입식 절차) 농장 ①청소·세척·소독 점검 → ②강화된 방역시설 보완 → ③농장 방역평가 순으로 재입식 사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농장 청소·세척·소독이 끝나면 시군 방역부서에 점검을 요청합니다.

**1차** 시·군 → **2차**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합동점검이 이뤄집니다.

\*2차 점검은 발생농장(가족농장),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농장만 실시

② 이와는 별개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⑧물품반입시설

※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농장 내·외부 전체에 대해 세척·소독을 실시합니다.

③ 농장 청소·세척·소독 및 강화된 방역시설 보완 및 종사자 교육을 마친 농장은 시·군 방역부서에 농장평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장 내로 축산차량(사료·분뇨·출하)이 진입해야 하는 농장은 농장평가 신청 시, 진입 필수차량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축산차량 관제를 통해 진입 필수차량 이외의 차량이 농장 내로 진입하는지를 상시 확인)

- 전문가·검역본부·지자체로 구성된 평가단이 ①청소·세척·소독, ②방역시설 설치 여부(방역의식 이행 여부 포함) 확인 및 ③환경검사를 실시합니다.

## 3. (재입식 실시) 청소·세척·소독 상태, 농장 평가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재입식을 실시합니다.

\* 다만, 양성농장(가족농장 포함) 및 양성농장 500m 이내 농장은 양성농장의 입식시험을 마친 이후 재입식 평가절차를 진행합니다.

# 절차 세부 내용

## 1. 재입식 사전 방역조치

- ① **(가축분뇨 처리)** ‘ASF 긴급행동지침(SOP)’ 9. 발생농장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
  - **(액상분뇨 소독)** 알카리제를 사용하여 pH 11.5 이상이 되도록 소독 처리한 후 2~3일간 둔 후, 산성제를 이용하여 pH 6~8로 중화 후 반출 등 처리
  - ※ 3km 밖 비발생 농장과 수매농장은 pH 처리가 어려운 경우 분뇨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음성을 확인한 다음 시도에서 지정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으로 이송하여 처리

### ※ 액상분뇨의 pH 조절 방법(예시)

- ① 가성소다(NaOH : 순도 98% 분말가루 시중 유통)를 사용하여 액상분뇨 1톤(1,000ℓ)에 10kg을 혼합하여 처리 후 5일 이상 격리상태로 둔다.
- ② 생석회(CaO : 순도 85% 분말가루 시중 유통)를 사용하여 액상분뇨 1톤(1,000ℓ)에 20kg을 혼합하여 처리 후 5일 이상 격리상태로 둔다.
  - \* 소독약 투입량은 분뇨의 특성에 따라 증감하여야 한다.
- ③ pH 확인은 시중에 판매되는 pH-paper를 이용하여 pH 조건표에 따라 확인
- ④ pH 측정시 소독처리 된 액상분뇨를 1ℓ 정도 용기에 담아 pH-paper를 2~3초간 넣었다 꺼낸 후 색깔로 판단한다.

- **(고형분뇨 소독)** 고형분뇨에 알카리제를 사용하여 pH 11.5 이상이 되도록 소독 처리한 후 1주일 이상 둔 후 격리 보관

### ※ 고형분뇨의 pH 조절 방법(예시)

- ① 고형분뇨에 생석회(순도 90% 이상 분말가루 시중 유통)를 사용하여 1톤당 40kg이 되도록 섞어서 pH 11.5 이상이 되도록 한 후 5일 이상 격리상태로 둔다.
- ② 고형분뇨와 생석회 혼합방법은 분뇨 15cm마다 생석회를 6kg/m<sup>2</sup>이상 되도록 균일하게 뿌려 준다.
  - \* 소독약 투입량은 분뇨의 특성에 따라 증감하여야 한다.
- ③ 이때 pH 확인은 소독된 고형분뇨 10g을 채취하여 1ℓ 정도 용기에 담아 물 100ml를 부어 교반한 후 pH-paper를 2~3초간 넣었다 꺼낸 후 색깔로 판단한다.

- **(액상·고형분뇨 pH 조절 후 중화 및 처리)** pH 11.5이상으로 처리 후 2~3일간 경과 후 아래에 따라 산성제제를 이용하여 pH 6~8로 이상이 되도록 중화

· 소독 후 2~3일간 격리된 액상 및 고형분뇨는 구연산(Citric acid : 순도 94% 액상 시중 유통) 10kg을 액상 및 고형분뇨 1톤(1000ℓ)에 중화

\* 소독약 투입량은 분뇨의 특성에 따라 증감하여야 한다.

· 중화된 액상 및 고형분뇨는 액비화, 퇴비화, 정화 및 위탁처리 가능

\* 단, 처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준 준수

- (ASF 발생 이전 생산된 퇴비·액비의 소독 및 처리) 액비는 액상분뇨의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퇴비는 톤당 생석회 40kg을 스킵드-로더 등을 이용하여 교반하여 5일 이상 보관

\* 퇴비, 액비의 pH 확인 방법은 액상 및 고형분뇨의 방법과 같음

· 교반 후 5일 이상 격리된 퇴비 및 액비는 외부 반출 가능

· ASF 발생 이전에 포장이 완료된 퇴비는 포장별 외부 소독 후 반출 가능

② (농장 세척·소독) 'ASF 긴급행동지침(SOP)' 9. 발생농장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농장을 철저히 세척·소독

**절차** 1)사전 지도·교육 → 2)예비 소독 → 3)축사 내 분뇨제거 및 환경정리 → 4)농장주의 청소 및 세척·소독 → 5)1차 점검(시군) → 6)2차 점검(동물위생시험소)

1) (사전 지도·교육) 시·군 가축방역관은 농장을 사전 방문하여 농장주에게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을 지도·교육

\* (안내·홍보) 설명서를 출력하여 배부하거나 리플렛 등 형태로 제작하여 농장주와 농장관계자에게 설명

2) (예비소독) 농장 청소·세척 및 소독 실시 전에 축사내부 및 분뇨 등에 대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축사외부의 차량이나 사람, 동물이 접근하기 쉬운 도로 및 가옥 주위 등에 대해서 소독 실시

3) (분뇨 처리 및 환경정리) 분뇨는 ①번의 분뇨 처리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하고, 농장 내 기구·장비·물품에 대하여 청소·세척·소독이 용이하도록 환경정리 실시

· 세척·소독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수도나 배수관을 막아 세척수가 발생지 이외의 지역으로 유출됨을 방지하도록 조치

· 필요시 굴착기로 구덩이를 파서 세척하고, 세척수의 외부누출을 방지

· 축사 내로 연결되는 전선을 외부와 차단하여 분무소독에 의한 합선 등 화재를 방지하는 조치

· 축사 내 전기 콘센트, 스위치 등은 비닐로 봉하고, 세척·소독 실시 후 소독수건으로 문질러 소독을 실시

\* 전기 콘센트 등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하거나 자연 건조

4) (청소) 축사 내 천장 → 벽면 → 바닥의 순서로 세정제 겸용 소독제를 분무한 후 청소를 실시

\*축사 내 물품·장비 등을 모두 청소하며, 구석진 곳 등 제거하기 어려운 잔존물 등은 토치 등을 이용하여 소각

- **(세척 및 소독)** 청소가 완료된 이후 ASF 유효 소독액을 이용해 천장 → 벽면 → 바닥의 순서로 세척·소독을 실시

· 축사 내 기구에 손상을 주지 않는 소독제를 선택하고, 유기물이 끼어 있으므로 소독약 농도를 높여 희석

**\* 소독액으로 세척·소독을 동시에 실시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

· 축사에 붙어 있는 분변, 사료, 깔짚, 먼지, 기타 오염된 물건 등은 소독수로 소독을 실시한 후 포대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매몰 또는 소각

· 모든 축사, 울타리, 부착기구 등은 소독약으로 간단히 세척 후 이들 부위에 부착된 유기물질, 먼지 등 이물질질을 브러쉬, 수세미 등을 사용하여 철저히 제거한 후 재소독

**\* 구석진 모서리, 기자재 접합부위 등 세척·소독이 용이하지 않은 부위의 이물질질을 철저히 제거**

· 사료통, 음수통 등은 모두 비우고 철저히 세척·소독

· 세척·소독과정에서 사람, 기계, 기구류에 의해 재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축사가 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충분히 젖게 소독수를 살포

· 발생농장의 축사, 사료창고, 농기구 보관함 등이 밀폐 가능한 시설인 경우 훈증 소독을 실시

· 축사 주위의 습지, 초지 및 오염이 가능한 환경에 대하여 축사 내부와 동일하게 소독을 실시

· 잡초가 많은 경우에는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

5) **(1차 청소·세척·소독점검)** 시·군 가축방역관은 청소·세척 및 소독 여부 확인을 위해 **<붙임3>**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6) **(2차 청소·세척·소독점검)** 1차 점검이 완료된 후 농장주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2차 점검을 신청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붙임3>** 점검표에 따라 청소·세척·소독 여부 재점검 실시(시군 합동)

※ **2차 점검결과 청소, 소독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토록 교육하고 미흡사항 보완 완료 이후 추가 점검 실시**  
**2차 점검은 발생농장(가족농장) 및 500m내 농장만 실시합니다.**

**※ 주요 점검사항**

- ① 농장 내 모든 장비·물품·분뇨 등의 청소·세척 및 소독여부
- ② 축사에 부착된 기자재나 벽면에 유기물질이나 기타 찌꺼기가 남아 있는지 여부
- ③ 모든 세척 및 소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④ 소독 등이 완료된 축사 출입구를 폐쇄하고 농장입구에 경고표지판 부착여부

**※ 대상별 소독 요령**

- ① **(차량·장비·도구 등)** 분뇨처리에 사용된 차량·장비·도구 등은 작업완료 즉시 내·외부에 묻어 있는 분뇨 찌꺼기를 철저히 제거하고 소독한 다음 1일 1회 이상 세척·소독과 충분히 건조시키는 과정을 5일간 실시  
- 분뇨처리에 사용된 차량·장비·도구 등은 10일간 다른 돼지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에의 이동을 금지

- 차량 등의 장비의 경우 작업자(운전자)가 접촉되는 부위(운전대·발판·좌석 등)에 대하여도 소독수건 등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소독
- 축주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접촉부위를 철저하게 소독
- 삽·괭이·리어카 등 농장 내 사용도구에 대하여 충분히 세척하고 수회 소독을 실시

- ② **(소독 장비)** 축사 내·외 및 주변 소독에 사용한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에 대하여도 소독액을 이용하여 운반기구·고무호스·손잡이 등을 소독
- ③ **(농장 주변지역)** 농장 진입로, 농장 내 주요 통행로, 축사주변, 분뇨처리장 등 오염 가능지역에 대하여 소독액이 흠뻑 젖도록 수회 반복하여 소독
- ④ **(발판 및 차량)** 소독조는 신발이나 차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주당 2~3회 교환해 준다. 염기제제, 알데히드제제 등 비교적 유기물에 강한 소독제를 사용한다. 차량소독에는 주로 산성제제나 염기제제, 염류 및 산성 복합제를 사용
- ⑤ **(토양 및 바닥소독)** 가축이 없는 축사바닥의 소독은 주로 생석회나 가성소다를 이용
  - 물을 바닥에 먼저 뿌린 후 생석회를 뿌려주거나, 물로 5% 생석회액을 만들어 살포
  - ※ **(생석회 사용시 주의사항)** 유제액을 만들때에는 물을 먼저 넣고, 생석회를 조금씩 넣어야 하며, 보관시에는 물기가 닿으면 화재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수분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 인화성 물질은 모두 치워야 한다. 사람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

## 2. 재입식 절차

- ① **(강화된 방역시설)** ASF가 발생한 농장이나 야생멧돼지와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심의회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며, 지구 내 양돈농장은 다음과 같은 8개의 방역시설을 설치

### 방역시설 설치 기준

방역시설	설치 기준(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
① 외부 울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의 외부에 설치하여,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li> <li>-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고,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li> <li>- 높이는 지상 1.5m 이상, 주기둥이 지면 아래로 50cm에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li> <li>-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li> </ul>
② 방조·방충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 사육시설에는 방조망과 방충망 또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방충시설 설치</li> <li>* 방충망은 방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 대체 가능</li> <li>- 퇴비사에는 방조망 설치</li> <li>*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진입 차단</li> </ul>
③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폐기물 보관 시설(냉장 또는 냉동 컨테이너 포함)</li> <li>* 보관시설 내외부 소독 및 청결 유지</li> </ul>

방역시설	설치 기준(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
④ 내부 울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사육시설, 사료빈 등 주변에 내부울타리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li> <li>- 사육시설과 1.2m 이상 이격, 사료빈과 접촉없도록 설치</li> <li><b>*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1.2m 이하 설치 가능하며, 무창돈사의 외벽은 울타리로 인정</b></li> <li>- 지상 1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기둥이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li> <li>- 내부울타리의 출입구에 설치한 방역실을 통해서만 사람과 물품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li> </ul>
⑤ 입출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하여 설치</li> <li><b>* 가능한 사육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일방통행 방식으로 설치, 가축운반차량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 경사로 형태로 배수 시설 설치</b></li> </ul>
⑥ 방역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자의 환복·소독, 신발 소독이 가능한 시설 설치</li> <li>- 외부울타리의 경계에 설치하되, 외부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 설치</li> </ul>
⑦ 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li> <li><b>*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어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b></li> <li>-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토록 실내연결공간으로,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li> <li>- 출입 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신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등을 전실 내부에 설치</li> <li>- 전실 내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각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설치</li> <li>-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각각 설치, 오염구역에 세척용 솔을 구비하고, 청결구역에 세척용 솔, 사육시설내부 전용 장화를 구비</li> <li>- 오염구역에 손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li> </ul>
⑧ 물품반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품, 소형기자재, 소모품 등 소독 후 반입 시설 설치</li> <li>- 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조물 등의 형태로 설치 가능</li> <li>- 다만, 사육규모가 적어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으로 농장 입구에 방역실이 설치된 경우 물품반입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li> </ul>
기타 (액비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비화시설은 내부 또는 외부울타리 밖에 설치</li> <li><b>* 액비화시설이 내부 또는 외부울타리 내에 있는 경우 차량이 진입하지 말고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하여 액비를 반출</b></li> </ul>



올바른 방역시설 설치사진 예시



외부울타리1



외부울타리2



방충 장비



방조망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1



물품반입시설2



액비반출



출입문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전실



퇴비사 차단

② (농장 평가 신청) 농장 세척·소독 점검과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가 완료된 농장은 농장 종사자에 대한 자체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방역부서에 최종 농장 점검·평가를 신청<붙임2>

- 농장 내로 축산차량(사료·분뇨·출하)이 진입해야 하는 농장은 농장평가 신청 시, <붙임1>의 진입 필수 차량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

\* 검역본부에서는 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해 진입 필수차량 이외의 차량이 농장 내로 진입하는 지 여부를 상시 확인

- 시군 방역부서는 농장에서 제출한 평가신청서를 접수·검토한 뒤 검역본부(방역감시과), 외부전문가(양돈전문수의사 등)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및 현장 점검·평가 <붙임3·4>

· 점검반은 ① 청소·세척·소독, ② 방역시설 설치 여부(방역의식 이행 여부 포함)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환경시료 검사를 실시

\* 축사 내의 바닥(분변) 및 사료통 틈새, 퇴비장, 차량진입로 등 동물의 접촉가능성이나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장 내 환경, 시설 및 기구 등의 시료를 채취(시설 및 기구에서 2점 이상씩 스왑)하여 항원검사 실시 (바이러스 검출 시 즉시 보고)

### 3. 재입식

① (재입식 및 사후관리) 청소·세척·소독상태 및 시설 설치여부 점검·평가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은 재입식을 실시

- 농장주는 재입식 전에 돼지 공급처, 입식규모와 날짜, 공급 차량번호 등을 관할 시군 방역부서에 알림

\* 시군은 재입식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재입식 시군별 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주기적으로 보고

\* 시군은 FTA 폐업 신청 등 재입식 포기 농장에 대해 폐업 처리 후 보고

- 검역본부는 돼지운반차량 이동경로,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여부 등을 차량 GPS를 통해 관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관할 시군과 농장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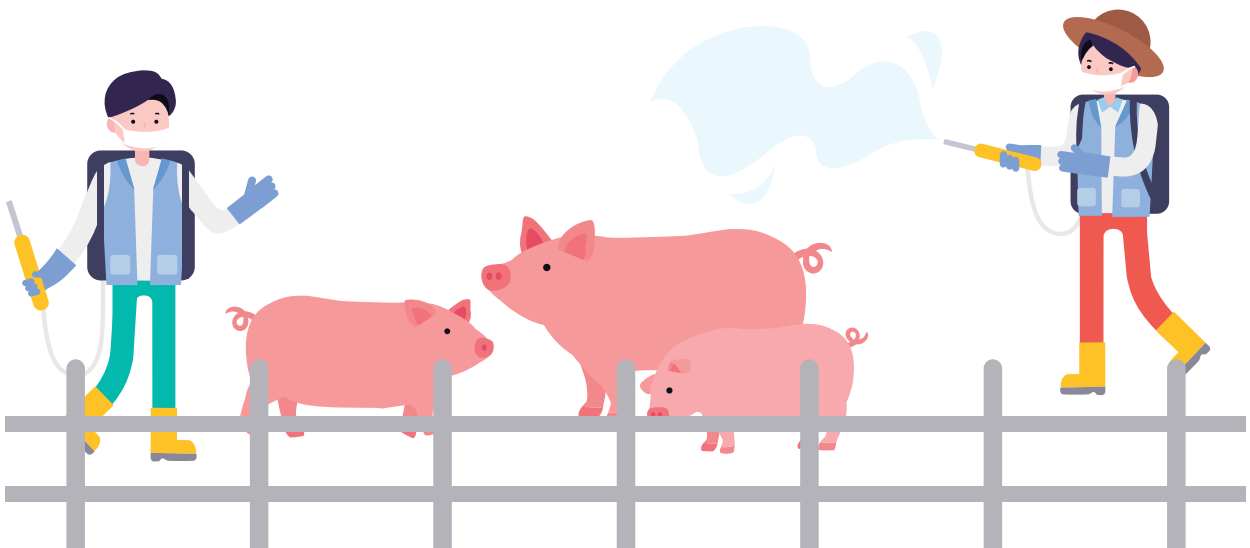
\* 타 지역 후보돈 입식 요령 등은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통보 예정(농식품부)

- 시도(시군)에서는 재입식 이후 농장에서 방역관리요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붙임6>하고, 재입식 농장 이상 여부를 매일 예찰하고 매일 소독하는 등 지속 관리

\* 시도는 시군과 함께 재입식 농장에 대한 자체 방역관리방안을 수립

② (재입식 시험) 발생농장과 가족농장 및 희망농장은 ‘ASF 긴급행동지침(SOP)’ 19. 살처분 농장의 가족 재입식 요령 및 별표 5<붙임5>에 따라 재입식 시험을 실시

- 재입식 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청소·세척·소독 상태, 농장 평가 및 환경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최종 입식을 허용





## 양돈농장 진입 필수 차량 등록신청서

농장 정보	농장주 성명 /연락처	성명 : 전화 : 휴대전화 :
	주소	

필수 진입 차량 정보	[ ] 사료	차량번호 :	소속 업체 :
		운전자 성명 :	운전자 연락처 :
		차량 등록지 주소 :	
	[ ] 분뇨	차량번호 :	소속 업체 :
		운전자 성명 :	
		차량 등록지 주소 :	
	[ ] 가축운반	차량번호 :	소속 업체 :
		운전자 성명 :	
		차량 등록지 주소 :	

\* 차량 종류별 1대 이상 등록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양식으로 함께 작성하여 제출

년 월 일

신청인(농장 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점검일 : 2020년 월 일

2. 농장 기본현황

농장명 (농장주)	주소	전화번호	살처분 현황	사육 유형	두수	영능 검업여부
		- 농장주 : - 농장장 :	- 일시 : - 두수 :	- 위탁 - 일관	- 모돈 : - 비육 :	

3. 점검결과

<농장 세척·소독 >

점검사항		점검결과(보완 필요사항 등 기재)	점검결과
외부	농장 입구 수풀, 웅덩이 제거		적합 / 부적합
	농장 진입로 세척 및 생석회 도포		적합 / 부적합
	농장 둘레 멧돼지 기피제 설치		적합 / 부적합
농장 내부	농장 내부 사료빈, 퇴비장 등 주변 소독 및 청결상태		적합 / 부적합
	퇴비장 내부 분뇨처리 및 청결상태		적합 / 부적합
	농장 내 기자재, 물품 청결상태		적합 / 부적합
	농장 내 보유차량 청결상태		적합 / 부적합
축사 내부	돈사 바닥 청결상태		적합 / 부적합
	돈사틀, 벽면, 천장 청결상태		적합 / 부적합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등록>

점검사항	점검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여부	고용 / 미고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총원	명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고용인원	· 1) 국가 , ( )명 · 2) 국가 , ( )명 · 3) 국가 , ( )명
전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시군구에 고용신고 적정여부 * 고용 종료인원 불일치도 '비적정'으로 체크	· 적정 / 비적정
시군구에서 불일치 인원에 대한 KAHIS 최종등록 여부 * 시군구 방역부서에서 최종등록까지 완료 필수	· 등록 / 미등록







◆ (방역 의식·행동) 농장주와 직원들의 차단방역 의식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질의·응답 및 관찰 등을 통해 파악  
 ※ 평가 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이행 평가 통과, 70점 미만인 경우 종사자 재교육 후 점건반 재평가

■ 총 점수 :

※ 잘 모름(점수없음), 대체로 알고 있음(전체 질의중 반 이상 답변 시)(3점), 잘 알고 있음(전체 질의에 모두 답변)(5점)

1	질의 응답(50점) 농장주에게 방역행동요령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수준으로 평가	평가결과		
		잘 모름	대체로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①	차량·운전자 방역관리 방법 * 가축운반 등 차량 및 운전자가 농장 도착 시 소독, 진입 통제 등 방역관리 사항			
②	방문자 방역관리 * 외부인에 대한 통제 및 소독 등사항			
③	가축 출하 전후 관리 * 돼지 출하 전, 출하시, 출하 이후 농장 방역관리사항			
④	외부물품 방역관리 * 외부물품에 대한 소독 등 방역관리사항			
⑤	폐사체 처리 * 자돈이나 모돈 등 폐사체가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방역관리사항			
⑥	퇴·액비장 관리 * 퇴비 액비 발생시 소독, 반출 등 관리사항			
⑦	기자재 관리 * 농장내부 기자재 보관, 소독 등 관리사항			
⑧	소독제 관리 * ASF유효소독제 및 보관, 적정 사용여부, 소독시간 등			
⑨	집중호우, 멧돼지 발생 등 위험시기 방역관리 * 호우, 멧돼지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⑩	모돈사 방역관리 * 모돈사 진입통제, 모돈 진입 시 소독 등 방역관리사항			

■ 총 점수 :

※ 잘 모름(점수없음), 대체로 잘 이행함(3점), 잘 알고 이행하고 있음(5점)

2	과제 수행(50점) 농장주에게 직접 수행토록 하고, 적정하게 이행하는 정도를 평가	평가결과		
		잘 모르고 있음	대체로 잘 이행함	잘 이행함
①	차량 세척·소독 * 차량 진입을 가정하여 소독 실시 시연 * 차량소독기 불량 등이 있는 경우 점수 미부여			
②	방문자 안내(방역복 및 장화신기 등) * 외부인 진입을 가정하여 방역복 착용, 손소독 등 시연			
③	가축 출하 전·후 세척·소독 * 가축 출하 전후 차량, 돈사 소독 시연			
④	외부 물품 소독 * 외부물품에 대한 소독 및 보관 시연			
⑤	돈사 내 폐사체 처리 * 폐사체 발생 시 처리방안 시연			
⑥	퇴·액비장 세척·소독 * 퇴비장, 액비장 주변, 내외부 소독 시연			
⑦	기자재 사용 후 세척·소독 * 농장내 기자재 소독, 관리 시연			
⑧	유효 소독제(희석배수 준수) 사용 적정 세척·소독 * ASF유효소독제 보유여부 확인 및 실제 희석배수에 맞춰 사용, 보관 등 시연			
⑨	농장 둘레 생석회 도포 및 기피제 적정 설치·관리 * 농장 둘레 생석회 도포와 기피제 설치여부 확인 및 시연			
⑩	농장 및 돈사 내 진입 시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 진입 전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시연			

### 1. 가축의 재입식 시기(생략)

### 2. 입식시험의 사전 준비

- 2.1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시장·군수는 별표 5의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방역요령을 발생 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시험가축선정·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 2.2 농장주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일주일 경과 후부터,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시장·군수에게 재입식을 신청 한다.
  -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주택·관리사·축사 내외·진입로·운동장·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3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세척 및 소독실시 실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4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한 점검 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입식점검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2차점검을 요청한다.
- 2.5 검역본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한 2차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시험 진행을 승인한다.

### 3. 시험가축의 선정

- 3.1 시험가축의 종류 및 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돈사별로 생후 60~70일의 돼지 각 3두 이상
- 3.2 시장·군수는 농장주로 하여금 입식시험에 사용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을 선정하도록 한다.
  - 시험가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가축을 선정한다.
- 3.3 시장·군수는 농장으로 시험가축을 이동하기 전에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항원·항체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시험가축 입식을 허용한다.

### 4. 입식시험의 방법

- 4.1 발생농장의 소유자 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구입일자·운반방법·항체검사결과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4.2 돼지사육농장에서는 돈사별로 돼지 각 3두 이상을 입식한다.
- 4.3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농장 중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4.4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간은 매 2일마다, 그 이후 60일까지는 매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 4.5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항원·항체 검사를 의뢰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을 승인한다. 입식시험 과정에서 부검 대상 또는 폐사축이 발생한 경우 조직 시료도 의뢰하며 이 경우 림프절, 비장 및 편도를 채취해야 한다.

[별표 5]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방역요령

단계별	추진요령
<p>1단계 (농장소독 및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에서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발생농장 등에 대해 입식시험과 관련한 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지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조치요령, 협조사항 및 세부추진계획 등 설명</li> </ul> </li> <li>◦ 농장주는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일주일이 경과되어 시험가축을 입식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농장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실시하고 시장·군수에게 입식시험 신청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독대상 : 축사 내외, 진입로, 운동장, 농장 내 사택, 축산기구 등 농장과 관련되는 모든 것</li> </ul> </li> <li>◦ 시험입식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시험가축의 입식을 허용한다.</li> </ul>
<p>2단계 (시험가축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가축 선정 및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식축종 및 연령 등 입식가축의 제반조건 검토·확인</li> <li>- 구입예정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혈청검사 등 실시</li> </ul> </li> </ul>
<p>3단계 (시험입식 농장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가축 입식 전 발생농장 등에 대한 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소독상태 및 시험축 최종 임상 확인점검</li> </ul> </li> <li>※ <b>점검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시험 추진</b></li> </ul>
<p>4단계 (시험가축임상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가축에 대한 정기적 임상관찰 및 점검표 작성·기록 유지 (개체별 점검표 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식 후 14일까지 2일 간격, 15일부터 60일까지는 주 2회 간격</li> <li>- 임상관찰 실시 기관 :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li> </ul> </li> <li>※ <b>아프리카돼지열병 유사증상 발견 시 해당 시·군에 통보, 도 및 검역본부에 신속 보고</b></li> </ul>
<p>5단계 (시험결과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가축 입식시험 종료 즉시(60일이후) 시험축에 대한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환경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재입식 조치</li> </ul>

## 1. 농장주변(9가지)

전파요인	차단방역 수칙
매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장 외부에 울타리 설치,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를 따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울타리는 높이 1.5m 이상으로 농장 둘레에 빈틈없이 설치</b></li> </ul> </li> <li>생석회 폭 50cm 이상 농장 둘레에 도포, 농장 진입로는 주기적으로 소독.</li> <li>농장 주변에 야생멧돼지(또는 폐사체, 분변)를 발견 시 즉시 환경 또는 방역부서에 신고.</li> <li>멧돼지 발생지역(농경지)에서 생산된 작물, 볏짚 등을 농장 내 반입금지</li> </ul>
차량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장비(트랙터, 경운기 등)를 농장 내 반입금지</li> <li>축산차량은 가급적 농장 진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바퀴, 차량하부 등에 묻어 있는 흙 등 유기물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하며, 운전석은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한다.</li> </ul> </li> </ul>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장 주변 깨끗이 청소, 작업복,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3일 간격으로 세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모기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축사 주변 오염 가능 환경(쓰레기 더미, 습지, 수풀 등)을 소독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b></li> </ul> </li> <li>진료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수렵인과 농경인 농장 출입 원천 금지</b></li> <li><b>* 출입구 개폐 관리를 철저히하고, 농장 주 출입로 외에 다른 출입구는 모두 차단</b></li> </ul> </li> <li>농장 관계자는 수렵 활동과 입산을 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야생동물의 서식지나 웅덩이, 멧돼지 발생시군 농경지 등 방문 금지</b></li> </ul> </li> </ul>

## 2. 농장내부(8가지)

전파요인	차단방역 수칙
매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사 내부 청결 유지, 퇴비사, 사료보관시설, 출하대 등을 주기적 청소·소독.</li> <li>농장내 야생조수류의 먹이 요소(사료, 잔반, 왕겨, 깔짚 등) 방치 금지.</li> <li>농장에 폐사체·유산축·태반 등을 방치하거나 퇴비사에 버리기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폐사축 처리기 사용, 업체 랜더링 이용 등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b></li> </ul> </li> <li>농장 내부 배수로·틈새 등에 조밀망을 설치하며, 퇴비사, 사료보관창고·깔짚(왕겨)보관창고 등에 조류차단망·조밀망 등을 설치.</li> <li>농장에서 기르는 동물(개, 고양이 등) 방목 금지, 농장 내에 묶어서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출입문 개폐를 철저히 하여 농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b></li> </ul> </li> </ul>
차량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장 내 사용 스키로더 등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한 후 농장 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보관 시 자외선등(UV) 등을 사용하여 상시 소독·살균</b></li> </ul> </li> </ul>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장 입구에 대인소독시설과 발판소독조 설치, 출입자 철저 소독 및 기록</li> <li>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하여 출입자를 철저히 소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출입자는 샤워와 의복(장화) 소독·교체 등을 실시하고 농장 내에서 활동</b></li> </ul> </li> </ul>

### 3. 축사내부(5가지)

전파요인	차단방역 수칙
매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 내부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청소·소독 실시.</li> <li>○ 축사 구멍 메우기, 그물망·방충망 설치를 통한 파리 등 곤충과 쥐 등의 축사 침입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풍기나 환기구(창문)을 통해 곤충, 조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설치.</li> <li><b>* 끈끈이·쥐덫·해충램프 설치, 구서·구충제를 활용하여 쥐·파리 구제</b></li> </ul> </li> <li>○ 새로 입식한 돼지나 환축은 소독된 격리사에서 격리하고 다른 돈사로 이동 전까지 꼼꼼하게 관찰</li> </ul>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즐 등)은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말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li> </ul>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 입구에 장화와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전실을 설치하고, 축사 진입 시에는 전용 의복과 장화로 갈아신고 손씻기를 철저히</li> </ul>

### 4. ASF 위험주의보 방역행동 수칙

- ① 집중호우기간 동안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장은 돼지공급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
  - \*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염소계 소독 후 이용(NaDCC 10ppm 사용 가능)**
- ② 집중호우기간에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외출을 자제
- ③ 집중호우기간에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농장에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
- ④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구서·구충 등 기본 행동 수칙(22가지) 준수 철저

### 5. 모돈주의보 방역행동 수칙

- ①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 금지(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 ② 모돈 접촉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위생장갑 착용 철저
- ③ 돈사 출입 전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준수 철저
- ④ 모돈 등에 고열 등 이상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의심 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 ⑤ 돈사에 물품 반입을 금지, 약품 등 불가피한 물품은 반드시 소독 후 반입
- ⑥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구서·구충 등을 통해 모돈사 주변 청결 유지

## 6. 장마 후 방역행동 수칙

### ■ 농장 주변

- 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울타리와 출입문을 수리하고 비로 인해 젖은 멧돼지 기피제는 즉시 교체하여 일정 간격으로 축사 경계선에 골고루 설치한다.
- ② 농장 주변은 깨끗이 청소하고 비에 젖거나 토양 등에 오염된 작업복, 모자, 신발 등은 세척, 소독 후 사용한다.
- ③ 생석회를 폭 50cm 이상으로 농장 진입로와 둘레에 도포한다.
- ④ 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또는 폐사체, 분변)를 발견할 경우 즉시 환경부서나 방역부서에 신고한다.
- ⑤ 호우 복구작업에 사용된 장비(트랙터, 경운기 등)는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는다.

### ■ 농장 내부

- ① 농장 내부는 청결을 유지하고 매일 소독을 실시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축사와 시설은 즉시 수리하여 야생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 ② 폐사체, 유산축, 태반, 쓰레기 등을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 ③ 스키로더 등 장비는 사용 후 세척·소독한 후 농장 내 물품보관시설에 보관한다.
- ④ 발판소독조는 방역실 등과 같이 비가림막이 설치된 장소에서 설치하고, 새로운 소독액으로 교체한다.
- ⑤ 농장과 사료빈 주변 등 쥐덫 등을 설치하여 쥐와 해충을 제거한다.

### ■ 축사 내부

- ① 돈사, 벽, 계류장 등을 청소·소독하고, 곤충이나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돈사 구멍에 그물망과 방충망을 설치한다.
- ② 돈사 입구 전실에 있는 의복과 장화는 철저히 세척·소독한다.
- ③ 돈사 출입 시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기본 방역 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④ 특히,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 ⑤ 모든 접촉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생장갑을 반드시 착용한다.
- ⑥ 고열 등 이상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의심 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 ⑦ 돈사에 물품 반입을 금지하되, 약품 등 불가피한 물품은 반드시 소독 후 반입한다.

## 7. 침수 농장 행동요령

- ① 침수 시 농가는 신속히 방역부서 신고
- ② 외부로부터 유입된 흙, 나뭇가지, 쓰레기 등은 소독 후 농장 내 매몰
- ③ 침수로 형성된 물웅덩이 제거, 축사내부 세척 소독
- ④ 사육 중인 돼지 이상 유무를 수시로 꼼꼼히 확인
- ⑤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까지 이동제한

유해성에 따른 분류	번호	제품명	제조사	성분	비고 (ASF권장 희석배수)	성상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1	다원올킬	(주)다원케미칼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0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2	바이시드산	(주)삼양애니팜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0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3	버콘-S	바이엘코리아(주)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0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4	비바존	(주)삼우메디안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00배	산제
구연산등 유기산류 함유제제	5	쎄니클린 스프레이	(주)이엘티사이언스	구연산 1.5g, 사과산 0.25g, 안정화목초액 2.5ml	원액	액제
4급암모늄 복합제	6	쎄탁-큐	(주)케어사이드	복합4급암모늄(ADBAC, ADEAC, DDAC) 100g, 시트르산 300g	600배	액제
염소제	7	애니가드	(주)동방	NaDCC 500g	60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8	에스라인	(주)성원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시트르산 100g	200배	산제
구연산등 유기산류 함유제제	9	에코스타 액	(주)이엘티사이언스	구연산 200g, 초산 100g, 인산 100g, 티몰 25g	200배	액제
4급암모늄 복합제	10	원클린액	(주)우성양행	4급암모늄염(DDAC) 100g, 시트르산수화물 200g, 인산 100g	600배	액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11	원탑콘	(주)케어사이드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00배	산제
삼중염 및 염소계 복합제	12	크린업-에프	우진비앤지(주)	삼중염 50%, NaDCC 5%	20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13	프리-팜	(주)유니바이오테크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3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14	케이원	이-글벳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5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15	그린캡	녹십자수의약품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5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16	하이캡	녹십자수의약품	삼중염 500g, 사과산 120g, 구연산 100g	20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17	라이프자켓-정	고려비엔피	삼중염 2.5g, 사과산 0.5g/1정(5g)	250배	정제
4급암모늄 복합제	18	스피드킬	다원케미칼	구연산200g, 벤잘코늄염화물(ADBAC)100g, 인산 60g	600배	액제
알데하이드 및 4급암모늄 복합제	19	옵티시드액	다원케미칼	G 56.625g, 복합4급암모늄(ADBAC, DDAC) 147.7g	400배	액제
4급암모늄 복합제	20	보디가드	씨엔지	G 56.625g, 복합4급암모늄(ADBAC, DDAC) 147.7g	400배	액제
과산화화합물제	21	보디가드-K	씨엔지	과산화 수소 250g, 과초산 50g	400배	액제
과산화화합물제	22	다자바 산화제	태광약품	과산화 수소 250g, 과초산 50g	400배	액제
삼중염 및 염소계 복합제	23	바이킬	(주)서울신약	삼중염 500g, NaDCC 50g	24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24	박탄-에스	대한방역공사(주)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0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25	아마존	(주)에드바이오텍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구연산 30g, 타르타르산 20g	20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26	에버가드	(주)한동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40배	산제



유해성에 따른 분류	번호	제품명	제조사	성분	비고 (ASF권장 희석배수)	성상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27	올크린업	대한뉴팜(주)	삼중염 500g, 사과산 150g	240배	산제
삼중염 및 염소계 복합제	28	울트라 시안산 콤프	이화팜텍(주)	삼중염 500g, NADCC 50g	24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29	저미사이드	(주)남전물산	삼중염 50%, 사과산 15%	20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30	제로킬	(주)제일바이오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4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31	크린올	(주)대호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0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32	트리플G	(주)참신홀딩스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40배	산제
4급암모늄 복합제	33	대성 가이드크린 액	(주)대성 미생물연구소	구연산200g, 복합4급암모늄(ADBAC) 100g	320배	액제
4급암모늄 복합제	34	바이킹	(주)한풍산업	디데실디메틸암모니아염(DDAC) 100g, 시트르산200g, 인산100g	320배	액제
구연산등 유기산류 함유제제	35	씨투스	(주)민우	구연산400g, 라우릴황산나트륨 600g	380배	산제
4급암모늄 복합제	36	크린백	(주)에스에프	디데실디메틸암모니아염(DDAC) 100g, 구연산 200g, 인산 50g, 타르타르산 50g	480배	액제
4급암모늄 복합제	37	팜닥터	(주)참신홀딩스	구연산200g, 복합4급암모늄(ADBAC, ADEAC, DDAC) 100g	500배	액제
4급암모늄 복합제	38	팜케어리퀴드	(주)씨티씨바이오	4급암모늄염(ADBAC) 100g, 시트르산 200g, 인산 100g	200배	액제
4급암모늄 복합제	39	팜크린 골드	(주)넬바이오텍	4급암모늄염(ADBAC) 100g, 시트르산수화물 200g, 인산 100g	160배	액제
알데하이드 및 4급암모늄 복합제	40	바이로시드	(주)씨티씨바이오	G 107.25g, 복합4급암모늄(ADBAC, DDAC) 248.6g	600배	액제
알데하이드 및 4급암모늄 복합제	41	팜액트	(주)퓨오바이더스	4급암모늄염(ADBAC, DDAC) 124.3g, 글루타알데하이드 53.63g	300배	액제
염소제	42	신일클로-T	에스비신일(주)	NaDCC 3.3g/정(5g)	800배	정제
과산화화합물제	43	블루스카이	제이비동물약품	과산화 수소 250g, 과초산 50g	300배	액제
기타(황산아연 함유제제)	44	스누캡	(주)알앤엘애니멀헬스	무수구연산 400g, 사과산 100g, Sodium dodecylsulfate 50g, 황산아연 300g, 헥사메타인산나트륨 100g	120배	산제
과산화화합물제	45	그린필드	에이피에스	과산화 수소 275g, 과초산 58g	400배	액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46	세이프-티	(주)우성양행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5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47	쓰리캡	(주)알앤엘애니멀헬스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8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48	잡스살균 파우더V990	팜클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00배	산제

유해성에 따른 분류	번호	제품명	제조사	성분	비고 (ASF권장 희석배수)	성상
삼중염 및 염소계 복합제	49	판킬	(주)코미팜	삼중염 500g, NaDCC 50g	25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50	핑크린	(주)성원	삼중염 500g, 사과산 150g	140배	산제
4급암모늄 복합제	51	하나텐 파워	(주)성원	구연산 200g, 복합4급암모늄 100g, 인산 100g	240배	액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52	에니크린	(주)넬바이오텍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160배	산제
알데하이드 및 4급암모늄 복합제	53	킹사이드	대한뉴팜(주)	G 150g, 4급암모늄 100g	320배	액제
4급암모늄 복합제	54	크린에코	에스비신일(주)	디데실디메칠암모늄클로라이드 100g, 구연산 250g	400배	액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55	에이스팜	(주)에스에프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구연산 50g, 타르타르산 30g	24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56	브로킬	(주)에이피에스	삼중염 500g, 사과산100g, 설파믹산 50g	160배	산제
4급암모늄 복합제	57	세다크린	(주)엠오바이오	4급암모늄염 120g, 시트르산 240g, 인산 120g	600배	액제
4급암모늄 복합제	58	케이투	(주)이-글벳	구연산 200g, 복합4급암모늄 100g	500배	액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59	불칸	이화팜텍(주)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4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60	큐-맥스	진우약품(주)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160배	산제
과산화화합물제	61	참신 산화수	(주)참신홀딩스	과산화 수소 275g, 과초산 58g	480배	액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62	프로텍트 M	(주)퓨오바이더스	삼중염 500g, 사과산 150g	20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63	마스터팜	(주)퓨오바이더스	삼중염 500g, 사과산 100g	240배	산제
삼중염 및 염소계 복합제	64	쓰리아웃	(주)퓨오바이더스	삼중염 500g, NaDCC 50g	200배	산제
4급암모늄 복합제	65	스타시드 액	(주)한풍산업	유효요오드 5g, 디데실메칠염화암모늄 90g, 인산 160g, 시트르산 100g, 황산 18g	240배	액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66	원샷존	(주)한풍산업	삼중염 500g, 말산 100g, 시트르산 100g	200배	산제
4급암모늄 복합제	67	이화 클린팜	이화팜텍(주)	벤잘코늄염화물 100g, 구연산 200g, 인산 100g	400배	액제
4급암모늄 복합제	68	주노마이 크로실드 제트71액	(주)동방코스메틱	벤잘코늄염화물 2.8g	3배	액제
삼중염 및 염소계 복합제	69	그린업	(주)성원	삼중염 500g, NADCC 50g	20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70	에버크린	(주)소프트아쿠아	삼중염 500g, 말산 100g, 설파믹산 50g	200배	산제
과산화화합물제	71	팜튼트	(주)소프트아쿠아	과산화수소 275g, 과초산 58g	400배	액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72	팜케어3	(주)씨티씨바이오	삼중염 500g, 말산 100g, 설파믹산 50g	240배	산제
4급암모늄 복합제	73	이과수	(주)애드바이오텍	4급암모늄 100g, 시트르산 200g, 인산 60g	480배	액제

유해성에 따른 분류	번호	제품명	제조사	성분	비고 (ASF권장 희석배수)	성상
4급암모늄 복합제	74	웰크린-씨	우진비엔지(주)	4급암모늄 100g, 시트르산 200g,	300배	액제
염소제	75	씨니스타	(주)이엘티사이언스	NaDCC 1000g	800배	산제
삼중염등 버콘-에스류	76	파워트리	(주)크린피스	삼중염 500g, 말산 100g, 설파믹산 50g	200배	산제
4급암모늄 복합제	77	바로크린	한국쌘벤(주)	벤잘코늄염화물 100g, 구연산 200g, 인산 60g	200배	액제
요오드화합물	78	팜세이버액	(주)유니바이오테크	유효요오드 2.61%, 인산 9.02%, 황산 8.82%	320배	액제
과산화화합물제	79	하이퍼크린액	한국쌘벤(주)	과산화수소 285g, 과초산 58g	800배	액제
과산화화합물제	80	베테랑액	한풍산업(주)	과산화수소 200g, 과초산 48g	200배	액제
과산화화합물제	81	이지세이프액	(주)이글벳	과산화수소 200g, 과초산 48g	400배	액제
4급암모늄 복합제	82	라이프라인	고려비엔피	벤잘코늄염화물 120g, 글루타탈 100g, 포르말린 210g	400배	액제
염소제	83	라이프가드-정	고려비엔피	NaDCC 5g/정(13g)	500배	정제

■ 검사기관 : 농장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검사기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항원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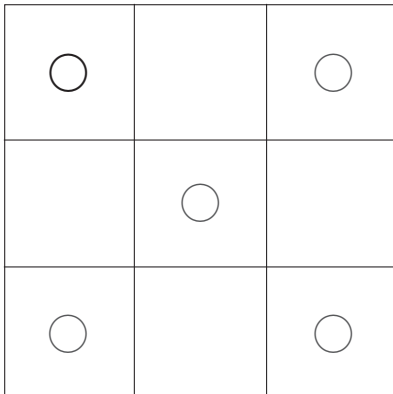
■ 시료 채취 장소

- 협잡물종합처리기, 제1저류조, 액비저장조, 슬러지저류조, 탈수 후 슬러지, 방류수조

※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시료 채취

■ 시료 채취 방법

- 장소별로 5구역에서 시료 채취



○ 표시된 구역에서 채취

- 구역별로 샘플 2~3g정도씩 채취하여 50ml cornical tube에 풀링(pooling)하여 1건으로 검사 가능  
(액체일 경우 구역별 5ml씩 채취)

- 시료 채취 장소에 분변이 없을 경우, 멸균 면봉 5개로 swab 후 풀링하여 1건으로 검사

※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시료는 결과 확인될 때까지 냉장 보관 ➡ 양성 확인 시 남아 있는 시료를 검역본부로 송부

[별표 1의2]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돼지 사육업, 종돈업 및 정액등처리업의 방역시설 기준

방역시설	<p>가. 외부울타리 :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의 외부에 다음 기준을 갖춘 울타리를 갖출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 동물의 총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한다.</li> <li>(2)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할 것</li> <li>(3)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며, 주기동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로 50센티미터에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하여 설치할 것</li> <li>(4)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li> </ol> <p>나. 내부울타리 :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소독설비를 통해 소독한 후 축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사료빈 등의 주변에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울타리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부울타리는 차량이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그 외곽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장내 차량 진입로가 좁아 내부울타리 설치시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구간에 한해 사육구역으로부터 1.2미터 보다 축소 이격하여 내부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무창돈사의 경우 돈사의 외벽을 내부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li> <li>(2) 축사내로 진입한 사람, 동물 등의 출입과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정해진 내부울타리의 출입구에 설치한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내부울타리 중 차량과 교차오염 우려없이 외부울타리에 설치한 방역실을 통하여 내부울타리내 사육시설로 사람과 물품이 진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의 출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li> <li>(3)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기동이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li> </ol> <p>다. 출입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의 출입구에는 외부울타리와 연결되어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li> </ul> <p>라. 방역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사 입구에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비한다.</li> <li>(2) 환복과 소독을 할 수 있는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차단된 방역실을 외부울타리와 경계에 설치할 것(외부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을 설치할 것). 다만, 바목의 단서에 따른 전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목제 6호에 따른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li> </ol>
------	---

마. 물품반입시설

-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조립식 가설 건조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다만, 사육규모가 적어 기자재, 소모품(사료제외) 등이 소량이고 농장 입구에 라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바. 전실

- 다음 기준을 갖춘 손씻기,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경우로서 위 라목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1)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할 것
-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연결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 (3) 출입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 신도록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등으로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
- (4) 전실 내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각각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설치할 것
- (5)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각각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구비하고,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구비할 것
- (6)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사. 돼지 사육시설에는 파리, 쥐, 새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을 설치할 것(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진입이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만, 방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충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아. 퇴비사에는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설치할 것(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진입이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자.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냉동 또는 냉장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보관시설 내·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구비할 것

차. 가축의 출하와 입식을 위한 입출하대를 내부울타리내로 가축 운송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하여 설치하거나 세척·소독이 용이하고 견고한 재질의 이동이 가능한 입출하대를 제작·구비하되, 가능한 사육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일방 통행 방식으로 돼지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설치 또는 구비할 것. 가축 운송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경사로 형태로 배수 시설을 설치할 것

카. 내부 또는 외부울타리는 액비운송차량이 울타리 밖에서 액비를 수거·운송할 수 있도록 액비화시설보다 안쪽에 설치할 것. 다만, 액비운송펌프 등으로 내부 또는 외부울타리 밖에서 액비운송차량이 액비를 수거·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